



제316회 정례회

2012.11.28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1. (가칭)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계획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(가칭)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2년 11월 2일
- 회부일자 : 2012년 11월 7일

3. 제안이유

- (가칭)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은 기심의(제300회) 의결하였으나, 혁신도시(석장리) 인근에 위치한 옥동초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동 개발지역에 옥동초를 대체 이전하여 명맥유지와 개교 시기를 공동주택 건설에 맞추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위 사항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학교설립 변경 개요

○ 당 초

(단위:수량-m², 금액-백만원)

개교(예정) 년월	구분	위 치	학급수			학생수	부지매입비		시설비	
			일반	특수	합계		수량	예산액	수량	예산액
2013. 3. (가칭) 석장초	신 설	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101답 일원	30	1	31	895	14,400	840	9,498	16,246

○ 변경 [(가칭)석장초 신설 → 신설 대체 이전(옥동초)]

(단위:수량-m², 금액-백만원)

이전(예정)년월 학교명	구분	위 치	학급수			부지매입비			시설비		
			일반	특수	합계	수량	예산액	증감	수량	소요액	증감
2014. 9월 옥동초	신설대 체이전	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101 답일원	30	1	31	14,400	840	-	9,498	15,963	△ 283

※ 시설비 감 사유 : 급식기구, 책걸상, 사물함 구입예산(282,800천원)으로 개교 지원비에 계상

나. 학교설립 변경사유

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인근교 옥동초등학교의 학생수가 지속적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옥동초 총동문회에서 명맥유지 요청과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건설계획의 불투명으로 2014년 9월로 개교를 늦추고자 하는 것임

3. 예산 소요액

(단위 : 면적 - m², 금액 - 백만원)

학교명 (가칭)	면 적		재정사업			비 고
	부지	건축	부 지 매입비	시설비	계	
옥동초	14,400	9,498	840	15,963	16,803	

4. 소요재원 확보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이 전 학교명	구 분	투 자 계 획				비 고
		'11. 제1회추경	'13. 본예산	'13. 추경예산	계	
옥 동 초	부지매입비	840			840	
	설계비	618			618	
	건축비	3,761	9,689	1,663	15,113	
	감리비		196		196	
	부대비		36		36	
	계	5,219	9,921	1,663	16,803	

5. 검토의견

- 본 설립 계획안은 기심의 의결한 것이었으나,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옥동초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교의 총동문회에서 명맥유지를 위해 신설 대체 이전을 요청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이고,
- 또한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불투명(입주예정일 : 2014년 6월 이후)하여 2014. 9월 개교 예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2.4>

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08.12.26]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(算定)한 금액

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]로 하고,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**건축비 및 시설비** 등 사업비로 한다.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[전문개정 2009.4.24]